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05 호
2013년 5월 1일 수요일

공 고

- 공고 제2013- 713호 도로의 지정·공고 2
- 공고 제2013- 724호 공인 신조 공고 3
- 공고 제2013- 729호 건설업 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13호

도로의 지정·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3. 4. 29 ~ 5. 13 (15일간)

2. 도로 현황

가. 위 치 : 수산동 28-30, 28-33

나. 도로길이 : 48.70m

다. 도로너비 : 6.0m

라. 도로면적 : 291.0m²(수산동 28-30:251.0m², 28-33:40.0m²)

마. 토지소유자 : 차 명 수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가설허가)

3. 건축허가 현황

가. 위 치 : 수산동 산41-4 외1

나. 건축주 : 차 명 수

다. 용 도 : 관 리 사

라. 규 모 : 연면적 66.0m², 지상1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24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공인 신조 사유 : 조직개편
2. 공인의 최초사용일 : 2013. 4. 30.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2.0cm×2.0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729호

건설업 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
2. 처분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3. 위반내용(상세)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2013.02.19)
4. 대상업체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보증가능금액실효일	처분내용
광서건설(주) 서*규 (120111-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934번길 5, 403호(논현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경기92-10-77)	실효일:2013.02.19 영업정지기간: 2013.04.22~2013.08.21	영업정지

※ 영업정지 처분일자 : 2013. 4. 22(월)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kicon.net/>),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